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투자기업 외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78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피투자기업 외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과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여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계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은 두지 않아 최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Ⅲ. 검토의견: 피투자기업 외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 개정안은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라 함)의 투자계약 시에 피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② 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u><신설></u>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제3자에게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2.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3.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8조(과징금) ①·② (생략)	제58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5조 제1항을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¹⁾에 대한 ① 투자, ② 융자, ③ 경영·기술지도, ④ 신기술사업투자조합²⁾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운용을 업무로 하는데,³⁾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기술을 개발·응용하여 상업화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현행법 제45조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대비 ‘융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 ‘투자’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투자하는데, 그 투자는 전환사채⁵⁾, 신주인수권부사채⁶⁾, 상환전환우선주⁷⁾ 인수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신기술사업의 투자계약은 일반적으로 ① 투자자, ② 피투자기업 및 ③ 이해관계인(창업자,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투자의 선행조건’,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함.

주식회사는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유한 책임을 그 특성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책임을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계약 시에 일정한 경우 투자금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연간 융자순증액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 초과할 수 없음)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5)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함.

6) 미래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을 말하며, 전환사채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가 전환에 의해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것임.

7)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만기가 되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이 있는 주식을 말함.

반환청구를 피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제3자인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에
게도 할 수 있도록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⁸⁾

□ 반면, 유사한 형태로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⁹⁾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
자 시에 원칙적으로 피투자기업이 아닌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연
대책임을 지을 수 없고, 이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대책임 부과가 가능함.¹⁰⁾¹¹⁾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

8) 실제로, 2024년도에 폐업한 피투자기업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에 따라 그 기업의 ‘대표자’ (이해관계인)에게 투자금 상환권(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발생함.

9)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함(「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행위제한) ③ 영 제25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11) 참고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76, 김종민의원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등을 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면직,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¹²⁾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투자회사 비교 >

구 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투자회사
설립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
투자 이행 의무 규정	없음	등록 후 3년까지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대상에 투자
융자업무	가능	불가능
세제상 지원	가능	가능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차입	가능	가능

□ 개정안은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신기술사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개정안에 따른 연대책임 부과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법의 행정제재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¹³⁾

□ “투자”는 “융자”와는 달리 피투자기업의 사업결과에 따라 이득을 얻거나 원금을 상실할 위험성을 함께 지는 것임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피투자기업의 사업실패 시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투자기업의 대표자 등 제3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바람직해 보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연대책임 부과 제한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 및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① 실제 현장에서는 신기술사업자가 충분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보강을 자청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신기술사업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② 정책자금 출자 중심의 벤처투자회사와 달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은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감독)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포함됨)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별표] 29. 제4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민간자금 출자 비중이 높아¹⁴⁾ 민간출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해야 하므로, 벤처투자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임.

□ 일률적으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경우 신기술사업 시장의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연대책임 부담 대상) 개정안은 “제3자”가 피투자기업의 책임을 연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고, 이 “제3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런데, 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신용을 보강해주기 위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금융위원회 역시 상대적으로 채무부담 능력과 수요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4) 2024년 기준 출자 비중을 살펴보면, 벤처투자조합은 정책금융 38 : 민간부문 6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정책금융 5 : 민간부문 95로 나타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자 현황(출자약정액 기준)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책금융	금액	2,906	5,890	4,156	3,239	2,466
	비중	9.3%	7.1%	6.3%	5.2%	5.1%
민간부문	금액	28,308	77,101	61,611	59,058	45,513
	비중	90.7%	92.9%	93.7%	94.8%	94.9%
합계		31,214	82,991	65,767	62,297	47,979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피투자기업 범위) 개정안은 연대책임 부과가 제한되는 피투자기업을 ‘신기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투자를 받는 모든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것은 신기술사업 시장의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피투자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3년미만 기업)¹⁵⁾ 등으로 한정해, 상대적으로 대표자 등의 신용보강 수요 및 능력이 있는 중·후기기업 투자 시에는 연대책임 부과 여부를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그러나, 초기창업기업에 한정해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할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은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현재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업권에 비해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은 중·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¹⁶⁾ 2024년 기준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의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총 투자 중 초기창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6) 2024년 기준 피투자회사 업력별 투자비중(% , 여신금융협회)

벤처투자업권 : (3년 이하) 19.0 (3~7년) 34.9 (7~14년) 46.1

신기술사업금융업권: (3년 이하) 18.1 (3~7년) 19.6 (7~14년) 62.3

업기업(사업 개시 후 3년미만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18%에 불과한데,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면 그 투자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의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 >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초기(3년미만)	금 액	8,524	11,986	13,544	13,538	9,610
	비 중	22.5%	14.5%	23.7%	24.5%	18.1%
중기(3~7년)	금 액	9,901	23,270	15,523	10,389	10,432
	비 중	26.1%	28.2%	27.2%	18.8%	19.6%
후기(7년초과)	금 액	19,492	47,314	27,999	31,299	33,100
	비 중	51.4%	57.3%	49.1%	56.6%	62.3%
합계		37,917	82,569	57,066	55,156	53,142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초기창업기업에 한정해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위험회피성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후기기업 투자 집중현상 방지를 위해 정책적 차원의 보완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자구 수정) 개정안은 제3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제한하되, 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의 단서 규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범하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임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안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투자’ 계약 시에 피투자기업의 대표자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의 조문 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용자’ 업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인 ‘투자’ 업무를 법문에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u>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제3자에게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u> 2. <u>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u> 3. <u>투자계약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한 경우</u> 4. <u>그 밖에 투자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u>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이하 생략)

참고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에 따라 연대보증이 제한되지만, 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취급하는 용자는 동법에 따른 연대보증 제한 대출상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제3자의 연대보증이 가능함.

문 의 처
02)6788-5113

-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 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한다.
-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 및 겸영여신업자

【참고자료】 신기술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현황¹⁸⁾

□ 신기술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실적

(단위: 억원, 건,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금액	37,917	82,569	57,066	55,156	53,142
투자건수	1,924	2,504	2,184	2,309	2,988
건당 투자금액	19.7	33.0	26.1	23.9	17.8
피투자기업 수	1,652	2,151	1,528	1,745	2,203
기업당 투자금액	23.0	38.4	37.3	31.6	24.1

▶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초기(3년 이하)	금 액	8,524	11,986	13,544	13,538	9,610
	비 중	22.5%	14.5%	23.7%	24.5%	18.1%
중기(3~7년)	금 액	9,901	23,270	15,523	10,389	10,432
	비 중	26.1%	28.2%	27.2%	18.8%	19.6%
후기(7년 초과)	금 액	19,492	47,314	27,999	31,299	33,100
	비 중	51.4%	57.3%	49.1%	56.6%	62.3%
합계		37,917	82,569	57,066	55,156	53,142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펀드 결성 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결성금액	31,214	82,991	65,767	62,297	47,979
결성펀드 수	444	794	522	569	525

▶ 출자자 현황(출자약정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책금융	금액	2,906	5,890	4,156	3,239	2,466
	비중	9.3%	7.1%	6.3%	5.2%	5.1%
민간부문	금액	28,308	77,101	61,611	59,058	45,513
	비중	90.7%	92.9%	93.7%	94.8%	94.9%
합계		31,214	82,991	65,767	62,297	47,979

18)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